버스교통 벽지노선 손실액 산정방식의 변화

2017. 04. 11

김원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목차

교통량 조사 기반 분석방법 손실액 산정방식의 변화

교통량 조사 기반 분석방법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 조사 시기

- 총 6일(평일3일, 주말3일), 10월 12일(일), 10월 14일(화), 10월 15일(수), 10월 16일(목), 10월 18일(토), 10월 19일(일)
 - 연속휴일(개천절+주말, 한글날+주말) 등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 제외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차량에 탑승하여 첫차 운행시간부터 막차 운행시간까지의 탑승인원 조사

● 조사 양식

조시	l일	2014년 00월 00일 0요일								
운행계통번호		⊏}3-4-000	운행 OO 부터 구간 OO 까지		구간거리		205.5km	운행 횟수	왕복 1회	
출발지점 및 시간 OO터미널					00시 00분 발 00시 00분 최)분 착	
도착지점	및 시각	OO터미널			00시 00분 발			00시 30분 착		
		가는편				오는편				
정류소	구간거리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재차 인원	정류소	구간거리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재차 인원	
기점	197.1	3		3		8.4	5		5	
종점	8.4		3	0		197.1		5	0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 조사원 교육

- 1차 교육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숙지)
 - 총 4일간 53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 일자	참여인원	교육장소	교육내용
2014년 10월 2일	16명	******* 교육실	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2014년 10월 6일	19명	******* 교육실	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2014년 10월 7일	8명	******* 교육실	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2014년 10월 8일	10명	******* 교육실	조사 개요 및 조사 방법
총 4일	총 53명	-	-

- 2차 교육 (조사장소 및 조사표 작성법 숙지)
 - 총 2일간 53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 일자	참여인원	교육장소	교육내 용
2014년 10월 10일	32명	******* 교육실	조사 장소 숙지 및 조사표 작성법
2014년 10월 11일	21명	******* 교육실	조사 장소 숙지 및 조사표 작성법
총 2일	총 53명	-	-

비수익노선 손실액 추정

● 손실액 추정 방법

- Step1. 현장조사 결과를 업체별/운행계통별로 교통량 조사 결과 정리
 - 업체별/운행계통별 승차인원, 하차인원, 재차인원

시간		도로구	로 등	이용객 실태			
	정류소	고속국도 (km)	국도 (km)	총 거리 (km)	승차인원(명)	하차인원(명)	재차인원(명)
08:00	기점		50	50	3		3
09:00	А	30	50	80	4	3	4
10:30	В		40	40	1	1	4
÷	С		60	60	1	0	5
÷	D	50	30	80	0	1	6
÷	Е		20	20	1	1	6
20:00	종점	80	250	330		6	0

비수익노선 손실액 추정

- Step2. 교통량 조사 결과를 손실액 추정 산정식에 적용하여 일/년 평균 손실액 추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 적용
 - 손실액 추정 산정식: 손실액(1일)=국토부고시킬로미터당운임xAx(B실제승차인원)x운행횟수
 - A: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의 운행거리(킬로미터)
 -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승차인원(15.72명)
 - 실제승차인원: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 운행횟수: 명령노선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 동장 또는 이장이 기록한 횟수(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 Km당 운송원가: 국도 116.14원/km, 고속국도 62.35원/km 적용
- (업체별) 손실액 산출 명세서

운행 계통	기점	종점	운행 횟수 (회)	운행 거리 (km)	국도 (km)	고속 국도 (km)	1회 평균 기준 승차 인원 (명)	1회 평균 승차 인원 (명)	일일 운송 손실액 (원)	연간 운송 손실액 (원)
***	А	G	2	90.6	22.4	68.2	15.72	12.2	****	****
:										

인가요율기준 평균승차인원 (충남)

□ 산훋근거

O 건설교통부지침 : 지교 91120 - 178호(1995, 3, 20)

기준승차인원 = 1km당 원가 ÷ 변경전 1km당 운임요율

- -, 1km당 원가 : 전년도에 적용한 1km당 원가 × (1+당해년도 운임요율 인상율)
- -, 변경전 1km당 운임요율 및 당해연도 운임요율 인상율 : 시외(직행·일반)버스 비포장도로 기준

□ 산출기초

O 1km당 원가

- -, 1995 : 584,0원 × (1+10,0%) = 642,4원
- -, 1996 : 642,4원 × (1+ 8,5%) = 697,0원
- -. 1997 : 697.0원 × (1+ 8.0%) = 752.7원
- -, 1998 : 752,7원 × (1+22,0%) = 918,3원
- -, 2000 : 918,3원 × (1+10,0%) = 1,010,1원
- , 2000 : 010,012 ~ (1.10,076) = 1,010,11
- -, 2002 : 1,010,1원 × (1+ 8,0%) = 1,090,9원
- -, 2004 : 1,090,9원 × (1+12,0%) = 1,221,8원
- -, 2006 : 1,221,8원 × (1+10,6%) = 1,351,3원 -, 2008 : 1,351,3원 × (1+ 9,0%) = 1,472,9원
- -. 2010 : 1.472.9원 × (1+ 6.9%) = 1.574.5원
- -, 2013 : 1,574,5원 × (1+ 7,7%) = 1,695,7원

O 기준 평균 증차인원

- -, 1995 : 642,4원 + 44,92원 = 14,30명
- -, 1996: 697.0원 + 49.00원 = 14.22명
- -, 1997 : 752,7원 + 53,17원 = 14,15명
- -, 1998 : 918,3원 + 57,42원 = 15,99명
- -, 2000 : 1,010,1원 + 70,05원 = 14,42명
- -, 2002 : 1,090,9원 + 77,06원 = 14,16명
- -, 2004 : 1,221,8원 + 74,72원 = 16,36명
- -, 2006 : 1,351,3원 + 83,68원 = 16,14명
- -. 2008 : 1.472.9원 + 92.55원 = 15.91명
- -. 2010 : 1.574.5원 + 100.88원 = 15.60명
- -, 2013 : 1,695,7원 + 107,84원 = 15,72명

전국의 시외버스 평균 승차인원 현황

□ 전국 현황

(기준: '06. 3월말 현재)

지역 평균승자인원		산줌근거	비교		
경기		e			
강원	14명	Ä	별도 산출기준 없음		
충북	16.35명	1,222원 + 74.72원 = 16.35명 1,091원 × (1+12%) = 1,222원			
충남	16.36명	1,221.8원 + 74.72원 = 16.36명 1,090.9원 × (1+12%) = 1,221.8원			
전북	14명	642원 + 44.92원 = 14.30명 584원 × (1+10%) = 642원			
전남	14.6명	1,221.95원 + 83.68원 = 14.6명 1,091.03원 × (1+12%) = 1,221.95원			
경북	16명	1,210.8432원 + 74.72원 = 16.20명 1,081.11원 × (1+12%) = 1,210.8432원			
경남	13.35명	(1Km 당 총괄운송원가 + 1Km 운임)			
제주	-	2			

□ 인가요율기준 평균 승차인원 산출지침

- 일 자:1995.3.20
- 문서번호 : 지교 91120 178
- ○내 용
 - 육운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계산 시의 인가 요율기준 평균승차인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 인가요율기준 평균승차인원
 - = 1Km 당 원가 ÷ 변경전 1Km 당 운임요율
 - · 1Km 당 원가
 - = 전년도에 적용한 1Km 당 원가 × (1+당해연도 운임요율 인상율)
 - * 적용 초기 1Km 당 원가 : 584원으로 책정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2015 세계교육포럼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관련 협조 요청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14.12.31)의 관련입니다.
- 2. 舊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벽지노선(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손실보상금 계산 및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5.8.31)을 통하여 소요 재원과 함께 국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완전 이양되었으므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 산출 및 지원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벽지노선별 특성을 감안하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정지원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3,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령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한 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조례 또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14,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및 적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벽지노선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기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유왕역시장(버스운영과장), 인천광역시장 (버스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전광역시장(버스철책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 세종특별지치시장(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경원도치자(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달류 과장),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 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지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배상한** 과장 **전**결 2015. 4. 27. **배석주**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1587 (2015, 4, 27,) 접수 물류교통과-6549 (2015, 4, 27,)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30 팩스번호 044-201-5582 /baesh@molit,go,kr / 비공개(5)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폐지
 - '충남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제6조(지원방법) 의미 상실
 - → 교통량 조사 등 사실에 의한 손실금 산정방식은 실효성 없음
 - → 새로운 손실규모 산정 방식 필요
- 재정지원 규모의 기준 모호
 - 전년도 재정지원 규모에 맞춰 당해 년도 재정지원금 편성
 - 충남 버스교통 운영체제는 민영제임. 비수익노선 손실 이외 다른 손실도 (개별) 재정지원을 함. 준공영제와 다르지 않음 → 적정이윤 고민도 필요
 - → 표준운송원가 및 회계처리지침(유류비 등) 개발 필요
-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행관리 필요
 - 업체 신청 재정보조금 사실 확인 및 인/허가 노선 관리 어려움
 - → 투명성 확보 및 운행관리를 위한 실시간 전산시스템 활용 필요

감사합니다.